

## 증평군 여성·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[ 2003. 12. 15 조례 제62호 ]

개정 2007. 3. 23 조례 제227호  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개정 2007. 11. 23 조례 제264호

개정 2008. 8. 6 조례 제293호  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일부개정 2018. 12. 28 조례 제845호  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성·아동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과 보호를 요하는 여성의 계몽지도를 위하여 증평군 여성·아동상담소(이하 “상담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상담소는 증평군 여성·아동업무 담당 부서에 둔다. <개정 2007. 3. 23, 2008. 8. 6, 2018. 12. 28>

제3조(업무) 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여성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
2. 보호를 요하는 부녀자의 계몽지도 및 직업알선
3. 윤락행위 등 방지를 위한 업무
4. 아동 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, 입양 위탁 및 기타 구호에 관한 사항
5. 여성·아동에 관한 개별지도 및 알선
6. 아동복지시설 및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조사 지도에 관한 사항
7. 유료 위탁아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
8. 기타 여성·아동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

제4조(소장) 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지방별정 5급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 다만, 여성·아동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3. 23, 2008. 8. 6, 2018. 12. 28>

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7. 3. 23 조례 제227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⑨ 까지 생략

⑩ 증평군여성·아동상담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복지문화과”를 “주민생활복지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복지문화과장”을 “주민생활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⑪ 부터 ⑫ 까지 생략

부칙(2007. 11. 23 조례 제26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8. 8. 6 조례 제293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⑮ 까지 생략

⑯ 증평군 여성·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주민생활복지과”를 “주민복지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주민생활복지과장”을 “주민복지실장”으로 한다.

⑰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(2018. 12. 28 조례 제845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